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43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김민전·백종헌·이철규

강선영 · 강승규 · 조경태

김기웅 · 인요한 · 김대식

조정훈 · 김용태 · 김미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.

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,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,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,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(안 제 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의원의 권한 정지) 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.

- 1. 구속된 경우
- 2.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

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)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제28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8조의2(의원의 권한 정지) 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내는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. 1. 구속된 경우 2.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
<u><신 설></u>	반은 경우 제48조의3(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)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제28조의 의원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